

□ 사건의 경과

사 건 번 호	2003가단124730
원 고	이00 외 1
피 고	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
소 제기일	2003. 11. 14.
판결 선고일	2006. 2. 2.
쟁 점	계모자 관계에 있는 자녀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II의 면책규정상의 자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
결과 (주문)	<input type="checkbox"/> 원고 승소 <input type="checkbox"/> 원고 패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원고 일부 승소
참 고 조 문	1. 민법 제750조 2. 민법 제767조, 제769조

□ 판결 요지

○ 사안의 개요

A는 2003. 6. 11. 13:35경 친동생인 B를 계모인 C소유의 승합차에 탑승시키고 가던 중 도로에 나타난 장애물(개)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과대조작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아 B는 우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게 됨.

○ 피고의 주장

피고는 '피보험자의 계모가 부(父)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, 위 특별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전운전 특별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'는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53857 판결을 들어, 계모인 C가 피고에게 가입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

약관 중 대인배상 II부분의 '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'라는 면책규정에 따라 원고 B는 피보험자인 계모 C의 자녀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책된다고 주장함.

○ 쟁점

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II의 면책규정에 있어 자녀의 개념에 계모자 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되는지의 여부

○ 법원의 판단

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II의 면책규정에 있어 자녀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, 면책규정은 보험자인 보험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 이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인데, 위 약관의 <용어풀이>란에 '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,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,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'라고 규정되어 있고, 현행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, 혈족 및 인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(민법 제767조),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혈족,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(민법 제769조), 결국 계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직계혈족인 부(父)의 배우자로서 법률상 인척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고, 위 <용어풀이>의 '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양모자 관계에 있는 자녀'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위 면책주장을 배척한 다음 대인배상 II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명함.

다만, 이 사건에서 있어서 운전자인 A는 동승자인 B와 친자매 관계인 점과 탑승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이념인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인 피고의 책임을 75%의 범위로 제한함.

□ 판결의 의미

총래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결은 찾아보기 어렵고, 오

히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53857 판결과는 다소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,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'부모'나 '자녀'의 개념을 해석하는 것과 자동차종합보험 중 대인배상Ⅱ의 면책약관상의 '부모'나 '자녀'의 개념을 해석하는 것은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고, 특히 면책약관의 경우는 그 성격상 약관의 해석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고객인 보험가입자(피보험자)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